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 화 75-7834

제 608 호
 77.5.26

인 배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5444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167 호	서울특별시소방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1168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4
◎ 고 시		
제 151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5
제 15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6
제 153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정사) 결정및 지적승인.....	7
제 154 호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및 지적승인.....	8
제 155 호	도시계획재개발 사업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8
제 156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16
제 157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 변경.....	1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계	보도계장	공보계장	문화계장	문화공보관	월 일	공람
	장		X			

1700

제 158 호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시행허가 (시행자지정)	18
제 159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	21
제 16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22
제 161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및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23
◎ 공 고		
제 109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24
제 110 호	K S 표시정지처분공고	24
제 111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25
제 112 호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25
제 113 호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공고	26
제 114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공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26
제 117 호	(강남구공고) :: 공인개작공고	29
◎ 출석통지서 (교육위원회)		31
◎ 정 정		3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167 호

서울특별시소방서 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소방총경 또는 소방령"을 "소방총경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소방경정,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을 "소방경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방통신 장비의 관리유지 및 운영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중 승진, 권보등을 한후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소방정	6명
지방소방령	13명
지방소방경	34명
지방소방위	40명
지방소방사	67명
지방소방장	197명
지방소방원	691명
교수원	7명
계	1,055명

사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기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168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본청 지방공무
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울류	2	행정직 2
3 급울류	195	행정직 128, 기계및전기직 7, 화공직 4, 농림직 4, 축산및 수외직 2, 외무직 2, 약무직 1, 보건직 2, 간호직 1, 지적 직 2, 토목및건축직 39, 행정 및 기계직 1, 행정 및 전 기직 1, 행정 및 토목직 1
4 급감류	352	행정직 223, 기계및전기직 25, 화공직 5, 농림직 8, 축산 및수외직 6, 약무직 2, 보건직 5,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68, 지적직 6, 통신직 2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이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중 승진, 전보등을 한후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
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그에
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분	정원	정원내용
4급유류	397	행정직 243, 기계및전기직 18, 섬유직 1, 화공직 7, 농림직 7, 축산및수의직 6, 약무직 4, 보건직 3, 간호직 3, 수산직 1, 토목및건축직 95, 지적직 8, 통신직 1
5급감류	23	행정직 7, 기계및전기직 2, 섬유직 1, 보건직 1, 토목및건축직 11, 통신직 1
5급유류	7	행정직 5, 전기직 1, 건축직 1
기능직	41	
고용원	508	
별정직	6	3급유류상당 5, 4급감류상당 1
소방직	53	지방소방감 1, 지방소방정 2, 지방소방형 9, 지방소방위 8, 지방소방사 8, 지방소방장 10, 지방소방원 15
합계		1,584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5. 1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학 교 (국민 학교)	영등포구 구로동 541 번지 일대	12,440 (3,763.1명)	
'	학 교 (중 학교)	영등포구 구로동 555 번지 일대	18,930 (5,726.3명)	
'	학 교 (중 학교)	영등포구 구로동 113 번지 일대	25,630 (7,753.1명)	

* 별첨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 제 152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25 호 (77.4.2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 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부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7. 5. 1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도봉구월계동 811 의 1 의 17 필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영광여자상업고등학교 이천</p> <p>3. 사업시행면적 : 39,190 평방미터 (8,830 평)</p> <p>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5 의 1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홍인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1979. 5.31</p> <p>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 명세</p>
--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격	소 유 권
도봉구월계동	811 외 1	담	1,218 평	학교법인영광학원
"	024 외 4	담	1,550 평중 650 "	"
"	816	담	972 "	"
"	818	담	733 "	"
"	832 외 1	전	115 "	"
"	812	담	778 "	"
"	824 외 5	담	123 "	"
"	814	전	46 "	"
"	817	담	458 "	"
"	813	담	237 "	"
"	810	담	611 "	"
"	808	담	308 평중 294 "	"
"	820	담	878 "	"
"	819	전	234 "	"
"	796 외 1	전	416 평중 400 "	"
"	795 외 3	담	609 "	"
"	825 외 2	전	1,000 평중 406 "	"
"	824 외 6	전	127 평중 58 "	"

별첨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3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 13조와 전선부고시제 41 호

(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5. 18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용의 청사 (법원청사)	강남구 서초동 산185 부근	100,400 ㎡ (30,371명)	사 유 지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4 호</p> <p>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 료시설)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p> <p>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p> <p>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5. 18 서울특별시 장</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종합의료시설	영등포구 가리봉동 49.5-3 외 27 필지	17,324 ㎡ (5,240.5명)	(공안산재외 로원)
별첨 :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5 호</p> <p>도시계획재개발사업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제 76 호 (77.4.30) 로 결 정된 도시계획재개발사업 (도림, 적선 서울역 - 서대문재개발구역) 에 대하여</p> <p>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p>				

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 도시정 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5. 19 서 불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지적 승인조서 : (도면생략) 재개발사업에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지적승인조서			
1. 적선 구역			
가. 계획 면적			
지 구 번	위 치	면 적 (㎡)	비 고
전 체 구 역	종로구내자동, 적선동일대	17,760	
적선 제1지구	" 255번지	2,372	
" 제2 "	" 219 "	980	
" 제3 "	종로구 적선동 82번지	3,650	
" 제4 "	" " 67-5 "	2,817	
" 제5 "	" " 161 "	2,126	
" 제6 "	" " 156-1 "	1,744	
" 제7 "	" " 170-1 "	2,178	
" 제8 "	" " 140 "	1,896	

나. 도로 계획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2	1	8	155	적선동 112 - 1	적선동 131-1	
"	2	2	8	35	" 128	" 64-4	
"	2	3	8	45	" 134 - 1	" 15-4	
"	3	4	6	31	" 125 - 1	" 138-9	
"	3	5	6	51	" 119	" 72	
"	3	6	6	59	" 67 - 3	" 64-4	
"	4	6	4	20	내자동 215-2	내자동 215-4	
중로	2	47	15	160	중2 - 87(내자동229)	대로3-20(내자동201-1)	기결정
중로	2	148	16	160	중2 - 87(적선동200-1)	" (적선동57-6)	
계				696			
다.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 적 (㎡)		비 율 (%)		비 고	
택	지	17,763		64			
도	로	8,281		30			
주	차 장	1,408		5			
공	원	330		1			
계		27,782		100			

2. 도영구역			
가. 계획면적			
지 구 별	위 치	면적 (㎡)	비 고
전체구역		64,119	
도영제 1 지구	서울 신문로 1가 57번지	1,598	
• 제 2 지구	• " 58-10 "	1,854	
• 제 3 지구	• " 58-7 "	1,751	
• 제 4 지구	• " 48 "	2,013	
• 제 5 지구	• " 43 "	3,482	
• 제 6 지구	• 당주동 147 "	1,344	
• 제 7 지구	• " 154 "	1,417	
• 제 8 지구	• 신문로 1가 27-7번지	1,241	
• 제 9 지구	• " 25 "	2,613	
• 제 10 지구	• 당주동 167-1 "	1,268	
• 제 11 지구	• " 160 "	1,904	
• 제 12 지구	• " 104 "	1,679	
• 제 13 지구	• " 76 "	1,449	
• 제 14 지구	• " 56 "	4,246	
• 제 15 지구	• " 2-2 "	1,310	
• 제 16 지구	• 내수동 1 "	1,446	
• 제 17 지구	• " 4 "	1,008	
• 제 18 지구	• " 170-2 "	13,666	
• 제 19 지구	• " 22-2 "	1,364	

지 구 별	위 치	면적 (㎡)	비 고
도영제20 지구	서울 내수동 15번지	7,230	
· 제21 지구	· 도영동 32-1	1,762	
· 제22 지구	· " 39	1,412	
· 제23 지구	· " 34-1	1,848	
· 제24 지구	· " 120-1번지일대	1,983	
· 제25 지구	· " 44	2,005	
· 제26 지구	· " 13	1,620	
· 제27 지구	· " 84	1,690	
· 제28 지구	· " 93	2,078	
· 제29 지구	· " 115-1	833	
· 제30 지구	· 내수동 10-2	1,005	

나. 도로계획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2류	1	8	35	당주동 29-12	당주동 167-2	
"	"	2	"	63	" 81-2	" 165-1	
"	"	3	"	32	" 80	" 74-1	
"	"	4	"	216	" 81-1	내수동 15	
"	"	5	"	34	도영동 69	도영동 50	
"	"	6	"	46	" 1-1	" 6-1	
"	"	7	6	45	신문로 1가33	신문로 1가39	
"	"	8	"	70	" 56-1	" 56-3	
"	"	9	"	68	당주동 143-2	당주동 163-7	
"	"	10	"	40	" 135-1	" 143-2	

등급	류별	번호	폭원 (㎡)	연장 (㎡)	기 점	중 점	비 고
소로	2류	11	8	82	당주동 128-42	당주동 72	
"	"	12	"	82	새창로 81-6	새창로 80-1	
"	"	13	"	45	도염동 18-1	도염동 49	
"	4류	14	4	30	내수동 1	내수동 190	
"	"	15	"	29	도염동 107-2	도염동 113-1	
"	2류	16	6	70	" 80-1	" 80-13	기결정
중로	"	148	15	410	광로 2-40 (신탄로 23)	중로 2-87 (도염동 23)	"
"	"	47	15	400	광로 2-40 (신탄로 58-3)	중로 2-87 (내수동 21)	"
"	"	149	15	320	새창로 (새창로 154-2)	중로 2-47 (당주동 130)	"
"	"	87	15	260	도염동 2-1	중로 2-47 (내수동 26)	"
계				2,377			

다. 보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	비율 (%)	비고
백지	64,119	69	
도로	24,390	26	
주차장	4,413	5	
계	92,922	100	

3. 서울역-서대문(외주로)구역

가. 계획면적

당 초		변 경			비 고
지구명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전체구역	99,951			50,871	
서울역-서대문	7,948	서울역-서대문	순화동 7-22	2,500	
제1지구		제1지구	번지일대		
제2지구	10,631	제2지구	" 13 "	2,930	

당 초		변 경			비 고
차 수 명	면적 (㎡)	지 구 명	위 치	면적 (㎡)	
서울역 - 서대문		서울역 - 서대문			
제 3 지구	10,912	제 3 지구	순화동 112번지일대	1,936	
제 4 지구	8,688	제 4 지구	" 92-1 "	1,913	
제 5 지구	8,316	제 5 지구	" 212-1 "	3,512	
제 6 지구	12,592	제 6 지구	" 198 "	3,317	
제 7 지구	5,346	제 7 지구	봉래동 1가 38-1 "	1,611	
제 8 지구	11,708	제 8 지구	" 33번지일대	2,077	
제 9 지구	7,700	제 9 지구	순화동 174 "	1,950	
제 10 지구	4,920	제 10 지구	" 159 "	2,280	
제 11 지구	11,190	제 11 지구	" 53 "	1,480	
		제 12 지구	" 7-13 "	8,863	
		제 13 지구	의주로 1가 1 "	3,650	
		제 14 지구	" 22 "	2,054	
		제 15 지구	" 19-1 "	2,212	
		제 16 지구	" 29-2 "	1,952	
		제 17 지구	" 33 "	1,754	
		제 18 지구	순화동 1-10 "	1,120	
		제 19 지구	" 1-6 "	2,240	
		제 20 지구	" 1-89 "	2,275	
		제 21 지구	" 1-65 "	2,503	
		제 22 지구	의주로 2가 122번지일대	1,784	
		제 23 지구	" 177-1 "	1,133	
		제 24 지구	" 155 "	2,182	
		제 25 지구	" 129 "	1,343	

나. 도로계획							
등급	류	번	복원	연장	기	점	비
	별	호	(㎡)	(㎞)			고
중로	2류	1	15	275	중부로 1가	81-7	기 정 변 경 (부분확장) 기 설 변 경
소로	1류	2	10	70	외주로 1가	30	
"	"	"	"	57	"	44	
대로	2류	4	30	50	"	7-3	
광로		4	45	50	"	"	
소로	"	5	8	65	외주로 1-101		
"	"	6	8	92	" 1가	111-2	
중로	3류	7	12	330	순화동	7-32	
소로	1류	8	10	50	"	99	
"	"	9	10	90	"	32-2	
"	2류	10	8	215	"	37-2	
대로	3류	10	25	"	"	"	
소로	2류	11	8	55	"	1-98	
"	3류	12	6	63	외주로 1가	7-3	
계				2,692			
다.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		적		비
					(㎡)		율 (%)
백	지		59,811				72
도	로		15,642				19
주	차	장	4,130				5
공	용	원	3,557				4
계			83,200				100

3. 폐도조서								
지구명	번호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연장 (m)	기 점	중 점
적선구역	1	폐도	소로	3류	6	118	적선동 121-1	적선동 184-6
도염구역	1	"	"	"	"	122	도염동 18-1	도염동 104
"	2	"	"	"	"	23	내수동 1	내수동 1
"	3	"	"	"	"	115	당주동 124	당주동 118
"	4	"	"	"	"	145	신문로 1 가 58-19	당주동 158
"	5	"	"	4류	4	127	신문로 1 가 34-1	" 149
서문역 - 서대문구역	1	"	"	3류	6	170	순화동 117-1	순화동 36-2
"	2	"	"	"	6	217	" 129-6	봉래동 27-38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별특별시 고시 제 156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1977.3.16) 규정에 의거 이불 고시한다.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5.19

서울특별시 장

순위	지구명	종별	기 점	중 점	연장(m)	비 고
12	노선미관지구	3 종	영천동 246	영천동산 12 외 17	500	노선양측 12m
91	"	4 종	봉원동 45	신촌동 1	1,350	"
92	"	4 종	회현동 2 가 15	회현동 1 가 146 외 6	550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 공급설비) 시행
허가변경

- 1. 당사 관내 도시계획시설 (전기공
급설비) 에 대하여 한국전력 주식
회사의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
업시행허가 변경 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 시
행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5.21

서울특별시장

가. 은수동 전기공급 설비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은수동 산 17 의 1 의
14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
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3) 사업시행면적 :

기허가면적 : 17,560 ㎡

변경허가면적 : 19,504 ㎡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5 번지 한국전력 주식회사

사장 김 영 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7.5 (거착수)

나) 준공년월일 : 1977.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

외의 권리 면세 (법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다우)

나. 광장동 전기공급 설비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
구 광장동 산 81-14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
회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154 광장변전소

3) 사업 시행면적 :
기허가면적 : 20,444㎡
변경허가면적 : 13,293㎡
(합 7,221㎡)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전력소 소장 김영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7.6.1
나) 준공예정일 : 1978.12.31

6)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
위 권리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토지 수용법제 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
소, 성명 (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158호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시행
허가 (시행자지정)

1. 건설부고시 제 76호 (77.4.30) 와
서울시고시 제 155호 (77.5.19) 로
재개발지구 지정 및 지적고시한
서울역-서대문 제 13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허가불
도시계획법 24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
16) 에 의거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1977.5

서울특별시장

2. 시행내용

지 구 명	지정면적	시행면적	시 행 자
서울역-서대문 지구제 13 지구	3,650 ㎡ (1,104 평)	3,890 ㎡ (1,176.8평)	중구 양동 286번지 (대우센타빌딩 20층) 남광보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정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 약의의 권리 명세							
소재지	지목	지적(坪)	소유권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영등포구 옥류산 17-1	임	2,850	영등포구신분로 2가 1-12	성해자	영등포구중학동 86	박영태	가동기권자
산 17-30	"	300	영등포구온수동 13	이영수	없음		미동기
산 45-8	대	70	영등포구신분로 2가 1-12	성해자	"		
산 45-9	전	210	"	"	"		
산 45-10	대	72	"	"	"		
산 45-11	잡	387	"	"	"		
산 17-4	임	600	"	"	"		
산 17-5	"	480	"	"	"		
산 17-23	"	98	"	"	"		
산 17-24	"	138	"	"	"		
산 45-1	전	120幢 83	서대문구충무로 2가 185-38	김만경	"		
산 45-15	대	90幢 31	"	"	"		
산 17-6	임	420幢 399	영등포구신분로 2가 1-12	성해자	"		
산 17-7	"	300幢 154	영등포구온수동 13	이영수	"		
산 17-8	"	270幢 36	"	"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소재지	지목	지적(평)	소유권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영등포구온수동 산17-1	임	2,850	종로구신문로2가1-12	성해자	종로구중학동86	박영태	기동기전자
산17-30	"	300	영등포구온수동13	이영수	없음		미동기
산45-8	대	70	종로구신문로2가1-12	성해자	"		
산45-9	전	210	"	"	"		
산45-10	대	72	"	"	"		
산45-11	갈	367	"	"	"		
산17-4	임	600	"	"	"		
산17-5	"	480	"	"	"		
산17-23	"	98	"	"	"		
산17-24	"	138	"	"	"		
산45-1	전	120중83	서대문구충무로2가185-38	김만경	"		
산45-15	대	90중31	"	"	"		
산17-6	임	420중399	종로구신문로2가1-12	성해자	"		
산17-7	"	300중154	영등포구온수동13	이영수	"		
산17-8	"	270중38	"	"	"		

32-20

제408호

시

보

1977.5.26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또는 건물외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입야 동산81-14		5,694 평중 4,400 평	서울특별시중구 명륜동 2가 5-23	조석래	서울특별시성 동구광장동 산 81-14 "	오광익 조남하	무허가건물 "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조제 3 항의관계인주소, 성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입야 동산 81-14		5,694 평중 4,400 평	서울특별시중구 구명륜동 2가 5-23	조석래	서울특별시성 동구광장동 산 81-14 "	오광익 조남하	무허가건물 "

3. 허가조건

가. 도시계획법 제 62 조 규정에
위한 지구내 공공용지 부담에
대하여는 부담물에 의한 당시의
결정에 따른다.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
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본 시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아동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5.24

서울특별시장

가. 뽕밭 변경조서

단위

구분	공 원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성북아동공원	성북구동소관동 1가	5,632	감 495	5,137
"	구획정리지구아동공원	성동구황학동 755	1,285	감 198	1,087
"	"	서대문구북가좌동 218	991	" 198	793
"	"	관악구봉천동 368	991	" 198	793
"	"	강남구천호동 499	991	" 132	859

◎ 서울특별시고시제 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5.24.

서울특별시장

○ 도로신설,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m	590m	천호동 122-1	천호동산 18-1	
"	"	3	6	240m	" 산 18-1	" 21-7	
"	"	"	"	40m	행당동 19-7	행당동 158-3	
"	"	"	"	40m	" 19-24	" 150-10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m	70m	광장동 281-1		광장동 301-4			
기정	"	1	10"	40"	장위동 237		장 위동 238-199			
변경	"	"	"	"	"	"	"		장 위동 238-199	가각정리
신설	"	"	"	350"	시흥군철산리 562-		시흥군철산리 62-2		아파트 진입로	
"	"	2	8"	180"	"산 62-2		" 520-5		"	
"	"	3	6"	140"	" 502		" 512		"	
기정	"	"	"	40"	사당동 708-12		사당 동 708-142		"	
변경	"	"	"	40"	" 708-57		"		위치 변경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1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하수도 및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5.27

서울특별시 상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구	모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하수도	B = 1.8m	- 1.5m	L = 620m		수유동 56의20		수유동 33의4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m	280m	수유동 56의12		수유동 281의200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9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부

1. 영동 제2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 정지중 일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77.5.

서울특별시 장

(환지계획 변경 공람 내역)

가. 사업명 :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22,759 명

다. 변경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2의 4호 의 38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0 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다.

1977.5.20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제 936 호
2. 허가일자 : 1974.6.11
3. 제조업체명 : 제일미성제조(주)
4. 대표자 : 주 광 선
5. 소재지 : 영등포구 문래동1가 86
6. 규격번호 : KS B7015
7. 품명 : 가정용 미상의 아암베드

- 8. 처분기간 :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때까지
- 9. 표시정지사유 : KS 규격기준미달
- 10. 기준미달항목 : 처수미달

◎ 서울특별시공고제 111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본 공고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 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5.

서울특별시강

(환지계획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반포동 399 의 1호외 33 필지
- 다. 변경면적 : 19,857.8 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112 호

환지계획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

- 1. 서울특별시공고제 99 호 (77.5.9) 로 환지계획 공람 공고한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통지장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 2. 환지에정지 지정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강남구 8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항을 별도 서면 통지할 것이
 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로 각음한다.

1977. 5.

서울특별시

(환지에 정지 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4,062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탄천
 매립지)

라. 사업기간 : 1971.8.24 - 1977.12.31

◎ 서울특별시공고제 113 호

하천골재 채취에 정지공포

서울특별시 1977년도 한강 하천골
 재 채취 예정지를 하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1. 하천명 : 한강
2. 지역 : 김포대교~시계 (가양지구)
3. 지역위치도 : 별첨도면과 같음.
4. 위치도열람 : 관할 양서출장소

◎ 서울특별시공고제 114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46호 (76.4.7) 로
 고시된 이문동~휘경동간 간선하수
 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5. 26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동대문구 휘경동
 100-1~휘경동 71-7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이문동~
 휘경동간 간선하수도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B = 15미터
 나. L = 338미터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7.3.8 ~ 77.11.30

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
 조서

7. 토지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다음.

수 용 토 지 지 번 조 서

순위	당초지번	분할수용지번	지목	수용 명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휘경동 100-1	휘경동 100-1	대	7	휘경동 100-1	신 락 주	지상물유
2	" 100-11	" 100-11	"	20	" 100-11	이 병 순	"
3	" 100-12	" 100-12	"	21	당십리동 79-4	박 인 길	"
4	" 100-13	" 100-13	"	23	휘경동 100-13	한 남 영	"
5	" 100-14	" 100-14	"	19	" 100-14	김 덕 보	"
6	" 100-15	" 100-15	"	2	" 100-15	강 두 석	"
7	" 101-22	" 101-22	"	13	"	"	"
8	" 101-1	" 101-1	구거	10	청량리동 271	중 동 주 주 식 회 사	"
9	" 101-5	" 101-5	대	3	휘경동 100-14	김 덕 보	"

순위	당 초 지 번	분 환 수 용 지 번	지 목	수 용 평 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0	취경동 101-6	취경동 101-6	대	2	취경동 100-14	김 덕 보	지상물유
11	" 101-10	" 101-28	"	10	중화동 425-31	정 도 일	"
12	" 101-11	" 101-29	"	1	"	"	"
13	" 104-4	" 104-33	"	11	취경동 104-4	김 치 원	"
14	" 104-15	" 104-34	"	3	강릉지유천동-208-3	조 병 규	"
15	" 108-4	" 108-36	"	110	중구필동 2 가 84-16	장 인 섭	"
16	" 109-2	" 109-4	"	9	"	"	"
17	" 71-1	" 71-6	"	3	종로구돈의동 125-2	박성 태외1인	"
18	" 71-4	" 71-7	"	110	"	"	"
19	" 110-6	" 110-6	"	6	취경동 194	박 운 산	"
20	" 110-7	" 110-7	"	141	석관동 122-36	이혜윤외 5인	"
21	" 112-43	" 112-54	"	30	종로구인사동 220-1	박 은 식	"
계	21 필지			462			

수 용 전 물 지 번 조 서

순위	위 치	구 조	수 용 평 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취경동 100-1	연와조와잡	5	취경동 100-1	백 점 순	
2	" 100-11	"	15.16	" 100-11	이 필 순	
	" "	세부조명록	0.52	" "	"	

순위	위 치	구 조	수용영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3	휘경동 110-12	연외조의집	13.80	휘경동 100-12	최동근	
		세부조명옥	0.75	" "	"	
4	" 100-13	연외조의집	11.10	" 100-13	김금애	
5	" 100-14	"	13.60	" 100-14	정동수	
6	" 100-15	"	11.50	이문동 346-81	송월배	
7	" 101-10	연외조의집 세부와합	12.40	중화동 425	정도일	
8	" 104-4	연외조의집	8.80	휘경동 104-4	김교문	
9	" 104-15	"	8.50	강릉시육천동208-3	조병규	
계		9 동	85.56			

◎ 강남구 공고제 17 호

공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
직인을 개각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7. 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1. 개각 사용년월일 : 77.5.15 00:00

2. 직인개각동 : 강남구 도곡동장의 인
 • 청담동장의 인
 • 신사동장의 인

3. 공인개각 인영

동 명	폐 각 인	개 각 인
<p>강 남 구 도목동장외인</p>	 <p>(구)</p>	 <p>(신)</p>
<p>청담동장외인</p>	 <p>(구)</p>	 <p>(신)</p>
<p>신사동장외인</p>	 <p>(구)</p>	 <p>(신)</p>

【 별자제 2 호서식 】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이 영 재 (李 永 宰)	소 속	서울구암국민학교
			직 명	지방행정서기
	본 적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457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대방동 492-72		
	출석이유	징계 협의 사실에 대한 진술(당 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		
	출석일시	1977년 6월 17일 16시 00분		
	출석장소	당위원회 3층 소회의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77년 5월 일 귀 하 서울특별시 교육인사위원회 위원장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㉞ 서울특별시 교육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정 정</div> <p style="text-align: center;">S8-SE</p> <p>칙제 1702 호 (서울특별시 토지전속물과 세 비장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오 시보 제 592 호 (77.2.22) 대 게재 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된 조예 제 1144 호 (서울특별시 하 천 점용토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와 제 607 호 (77.5.13) 에 게재된 규</p> <p style="text-align: right;">1977. 5 서울특별시장</p>			
구 분	페이지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제 592 호 77.2.22 자 (부칙제 2 조) 조예 1144 호	15-3	1977년 1월 1일 호 592 호 55.5.22 호 441	1976년 1월 1일
제 607 호 77.5.13자 규칙 1702 호	76-13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이 호 208 하·법·이라 한다) 제 호 81.2.22 196 조 및 서울특별시세 호 5051 조예 (이하·조예·라 한 다)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 규칙은 지방세법 (이 하·법·이라 한다) 제 196 조 및 서울특별시 세조예 (이하·조예·라 한다)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